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

발의연월일: 2020. 6. 3.

발 의 자:이정문・신동근・김철민

안민석 · 기동민 · 박홍근

도종환 · 서영교 · 변재일

서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체계적인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을 개발하였으나 현행법상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활용을 못하고 있음.

이에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실질적 결과물 산출을 위하여 보안조치 마련을 강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치매 관련 사업 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자료 연계의 원활화를 추 진하며,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성년후 견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후견사업 업무를 추가하는 등 신규 업무를 명시함(안 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제15조, 제16조제 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제16조의2, 제17조제2항제6호의2 신 설, 제17조의3 신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를 "치매 발생 위험요인, 치매 발생, 치료 및 관리 등"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등록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치매검진사업
- 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 3.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 4.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5. 치매등록통계사업
- 6.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 7.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 8. 제17조의3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 9.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수의 기관 또는 사람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

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지체 없이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업무
- 11.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업무의 지원
- 12.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및 평가
- 13. 제17조의3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의 운영

제16조제2항 중 "그 업무에 필요한"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으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병원급 의료기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제16조의2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9.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견사무의 지원

제17조제2항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사업 제3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 런 사업과 치매안심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 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보건복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① --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 -----치매 발생 위험요인, 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 치매 발생, 치료 및 관리 등--이고 체계적으로 수집 · 분석하 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 ·관리·조사 사업(이하 "치매 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 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_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등록 통계사업과 관련하여 고유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 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제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 · 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 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 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 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u><신 설></u>

]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
는 시장・군수・구청장(제20조
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받
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u>다음 각 호의 업</u>
<u>무 수행을 위하여</u>
1. 치매검진사업
2.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3.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
의 가족지워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자료에 한정한다.

<신 설>

- 4.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 제 이용지원
- 5. 치매등록통계사업
- 6.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 7.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 8. 제17조의3에 따른 치매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 9.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 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 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 보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 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 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 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 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 관 또는 사람은 개인식별이 가 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공하 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 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복수의 기

<신 설>

-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치매 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 7. (생략)
 - 8.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 수집 • 분석 및 제공
 - 9. 10. (생략)

<신 설>

<신 설>

관 또는 사람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 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 한 후에는 지체 없이 개인식별 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고 복 <u>구 또는 재생되지</u>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 는 자료 등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7. (현행과 같음)
- 8.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업무
- 9. 10. (현행과 같음)
- 11.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 업무의 지원
- 12. 치매안심센터의 지원 및 평 가

<신 설>

11.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u><신 설></u>

<신 설>

③ (생 략)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 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7. (생 략)

<신 설>

<신 설>

시스템의 운영 14.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13. 제17조의3에 따른 치매정보
	시스템의 운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u>14.</u> (현행 제11호와 같음)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②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판	<u>중다음 각</u>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의 병원급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 3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의 병원급 의료기관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u>관</u>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의 병원급 의료기관
운영하는 기관 ③ (현행과 같음) 세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3) (현행과 같음) 1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ㆍ
1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①	운영하는 기관
①	③ (현행과 같음)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	①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	
	1. ~ 7. (현행과 같음)
인 후보자의 추천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후견
	인 후보자의 추천
9.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	9. 제12조의3에 따라 선임된 후

8. (생략)

② • ③ (생 략)

(생 략)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략) <신 설>

6의2. (생략)

7. (생략)

③ • ④ (생 략)

<u><신</u> 설>

견인에 대한 감독지원 및 후 견사무의 지원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 견제 이용지원사업

6의3. (현행 제6호의2와 같음)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치매정보시스템의 구 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치매관련 사업과 치매안심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 호법 |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

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 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 건복지부장관은 「개인정보 보 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 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 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